2023년 장애인 활동지원 수가현실화를 위한 기자회견

“2023년 수가 17,500원으로 인상, 국회가 해결하라!”

◯ 일시 : 2022년 11월 9일(수) 오전11시
◯ 장소 : 국회 앞
◯ 주최 :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현실화를 위한 전국공동행동

■ 사　　회 : 박현실 (다같이유니온 사무처장)

■ 현장발언

- 현장발언1　문종권 (장애인자립선언 대표)

- 현장발언2　이문인 (다같이유니온 전국장애인활동지원사지부 지부장)

- 현장발언3　전덕규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사무국장)

- 현장발언4　박환수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전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문제 국회가 해결하라!
2023년 수가 17,500원으로 인상하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2011년 법제화 된지도 10년이 지나, 이제는 중증장애인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활동지원수가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기준이 없다. 당사자가 참여하는 절차도 없이 오로지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수가는 단 한 번도 근로기준법 상 임금을 보장하도록 정해진 적이 없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활동지원사를 필수노동자라고 치켜세웠다. 비대면 노동이 불가능한 돌봄노동자들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수가 인상은 미약한 수준이었다. 2022년 수가는 전년대비 5.6% 인상된 14,800원이다. 이 수가로 활동지원사 인건비와 기관의 운영비를 알아서 나누어야 하는 구조에서, 활동지원사에게 법정수당을 지급하면, 운영비가 없고, 운영비를 사용하면 법정수당 지급이 어렵다. 이렇듯 정부가 나서서 활동지원사의 노동권을 박탈하고, 기관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불법 기관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2023년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현실화를 위해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17,500원으로 인상하라!
하나. 법정수당, 기관운영비 전액 수가에 반영하라!
하나. 당사자 참여 보장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결정위원회' 구성하라!
하나. 인건비와 기관운영비를 분리 산출하고, 분리 지급하라!
하나. 감염 및 재난 등 긴급상황에 따른 활동지원사 임금 보전하라!

좋은 일자리에서 좋은 서비스가 나온다. 활동지원사 처우개선과 서비스질 개선, 그리고 기관운영 현실화 문제의 모든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예산 논의 시 우리의 요구인 수가 17,500원 인상을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22년 11월 9일
2023 장애인 활동지원 수가 현실화를 위한 전국공동행동

[붙임-요구안 및 해설서]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가현실화를 위한 요구안

2023년 수가 현실화를 위한 5대 요구

Ⅰ.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17,500원으로 인상하라!
Ⅱ. 법정수당·기관운영비 전액 수가에 반영하라!
Ⅲ. 당사자 참여 보장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결정위원회' 구성하라!
Ⅳ. 인건비와 기관운영비를 분리 지급하라!
Ⅴ. 감염 및 재난 등 긴급상황에 따른 활동지원사 임금 보전하라!

2022. 11. 9.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현실화를 위한 전국공동행동

굿피플 / 굿잡자립생활센터 / 노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어울림 / 누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민주노총 정보경제서비스연맹 다같이유니온 부천노인복지센터 / (사)장애인자립선언 /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활동지원센터 /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원주지역자활센터/ 인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서구지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큰솔장애인자립생활센터 /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요구안 (증액요구안)

□ 정부안
- 시간당 단가 15,570원
- 총액 1,991,879백만원

□ **수가현실화 공동행동 요구안**
- **시간당 단가 17,500원**
- **증액요구안 241,235백만원**

□ 증액요구안

		대상자수	단가	급여시간	개월	국비비율	금액 (단위:백만원)
정부안	1.기본급여	115,000	15,570	127	12	0.67	**1,828,295**
	2.보전급여	19,613	15,570	21.04	12	0.67	51658
	3.65세도래	608	15,570	154	12	0.67	11721
	4.신규 65세미만노인성질환	2,720	15,570	160	12	0.67	54480
	5.계(1+2+3+4)						**1,946,154**
	6.가산수당						21925
	7.위탁사업비						23296
	8.운영비						505
	9.한시지원						0
	10.총계(1+2+3+4+6+7+8+9)						**1,991,879**
공동행동안	11.기본급여	115,000	17,500	127	12	0.67	2,054,923
	12.보전급여	19,613	17,500	21.04	12	0.67	58,060
	13.65세도래	608	17,500	154	12	0.67	13,174
	14.신규 65세미만노인성질환	2,720	17,500	160	12	0.67	61,232
	15.계 (11+12+13+14)						**2,187,389**
증액요구안(15-5)		241,235백만원					

Ⅰ 23년 수가 17,500원으로 인상

◇ 제안사항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17,500원으로 인상

◇ 현황 및 제안이유

<표1> 수가 17,500원 산출근거

구분		산출 근거	지출 항목
기본시급		기본시급 (A)	10,000 원
주휴수당		기본시급/5 (B)	2,000 원
연차수당		19일 기준, 19/260 * 10,000 (C)	730 원
유급휴일 수당		17일 기준, 17/260 *10,000 (D)	653 원
인건비 소계			13,383 원(가)
퇴직(적립)금		(가)/12	1,115 원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국민연금	(가)*4.5%	602 원
	건강보험	(가)*3.495%	468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6.135%	29 원
	고용보험	(가)*1.45%	194 원
	산재보험	(가)*0.763%	102 원
인건비성 경비 소계			1,395 원(나)
인건비성 경비 총계			15,893 원(가+나)
수가 대비 인건비성 경비 지급율			90.0%
운영비		수가요구(안)×10%	1,607 원(다)
합계(수가 요구안)			17,500(가+나+다)

◎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정부의 낮은 수가 책정으로 최저임금만을 받아왔음. 정부는 코로나 19 감영병 시기 필수인력에 장애인활동지원사를 포함하였고,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법과 조례 등으로 지원을 약속하고 있음. 따라서 기본시급은 필수노동자인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최소한의 지원을 위해 1만원 이상으로 책정해야 함

◎ 위 표에 제시된 평균연차 19일은 전국공동행동 참여 기관 중 일부 기관 소속 활동지원사 근속 현황을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정부 수가에는 사회보장정보원에 등록된 장애인활동지원사 평균 근속에 따른 평균 연차를 반영 요구함

◎ 23년 법정유급휴일 수는 총 17일. 유급휴일 수당 전액 반영 요구함

<표2> 2023년 월별 유급휴일 수당 지급 개수 (총 17일)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유급휴일	**5개**	**0개**	**1개**	**0개**	**3개**	**1개**
내용	1(신정) 21,~24(설)	-	1(3.1절)	-	1(노동절) 5(어린이날) 27(부처님오신날)	6(화, 현충일)
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유급휴일	**0개**	**1개**	**3개**	**2개**	**0개**	**1개**
내용	-	15 (광복절)	28~30 (추석)	3(개천절) 9(한글날)	-	25 (성탄절)

Ⅱ 법정수당, 기관운영비 전액 수가에 반영하라!

◇ 제안사항

- 전국 활동지원사 평균 근속에 따른 연차수당 전액 반영
- 법정유급휴일 수당 전액 반영
- 연장수당 반영
- 5대 보험료율 23년 기준 요율 반영

◇ 현황 및 제안이유

<표1> 22년 수가 대비 인건비성 경비 지출 현황

구분		산출 근거	지출 항목
기본급		2022 년 최저임금 (A)	9,160 원
주휴수당		최저임금/5 (B)	1,832 원
연차수당		18일 기준, 18/260*기본급 (C)	634 원
유급휴일 수당		20일 기준, 20/260*기본급 (D)	704 원
퇴직(적립)금		(A+B+C+D)/12	1,028 원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국민연금	(A+B+C+D)*4.5%	555 원
	건강보험	(A+B+C+D)*3.495%	431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6.135%	50 원
	고용보험	(A+B+C+D)*1.45%	179 원
	산재보험	(A+B+C+D)*0.74%	91 원
활동지원사 인건비성 경비 총계			14,663 원

◎ 22년 수가 14,800원에서 <표1>에서 보듯이 필수 인건비성 경비 14.663원을 지출하고 나면 137원, 수가대비 1% 정도의 비용으로 기관은 전담인력 인건비, 배상책임보험, 보수교육비, 사무실 운영비 등을 감당하기 불가능함

◎ 따라서 23년 수가에는 23년 기준 전국활동지원사 평균 근속에 따른 평균 연차수당 및 23년 기준 법정유급휴일수당을 전액 반영하여야 하고, 5대 보험료율 또한 23년 기준 요율을 반영하여야 함

◎ 더불어 해마다 수가에 연장수당은 아예 반영조차 되어 있지 않음. 이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시간이 길어 부득이하게 연장근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급여에 미반영되어 있어, 활동지원기관에서는 연장근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장애인 당사자는 활동지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며, 장애인활동지원 노동자에게는 노동권을 박탈하는 것임

Ⅲ 당사자 참여 보장하는 ‘수가 결정위원회’ 구성

◇ 제안사항

당사자 참여 보장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결정위원회’ 구성

◇ 현황 및 제안이유

◎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가칭)수가결정위원회 구성이 필요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장에는 ‘장기요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장기요양위원회는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노인단체 등 당사자 주체가 참여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을 결정함

◎ 따라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비용의 정상적인 산출을 위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당사자 주체가 참여하여 민주적 절차와 합리적인 심의를 통해 활동지원 급여를 결정하기 위해 (가칭) 수가 결정위원회 구성해야 함

Ⅳ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분리 지급

◇ 제안사항

인건비와 기관운영비를 분리 지급

◇ 현황 및 제안이유

◎ 현재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통으로 지급되는 활동지원 수가체계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과 활동지원노동자가 갈등을 양산하는 구조임

◎ 법정인건비를 지급하면 운영비가 부족하고, 적정 운영비를 사용하면 법정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마다 두 주체가 서로 갈등. 근본적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 산출하고, 분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Ⅴ 감염 및 재난 등 긴급상황에 따른 활동지원사 임금 보전

◇ 제안사항

감염 및 재난 등 긴급상황에 따른 활동지원사 임금 보전

◇ 현황 및 제안이유

◎ 장애인활동지원은 장애인의 일상과 매일의 삶을 유지하게 하는 가장 중용한 서비스임. 특히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전 국가적으로 사회적거리두기 실천할 때, 사회적거리두기가 불가능한 필수노동자가 활동지원사이며, 활동지원사는 자신의 안전 뿐만 아니라 감염으로부터 취약한 장애인의 안전까지도 책임져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음

◎ 더불어 서비스 시간만큼 시급을 받고있는 시급제 노동자인 활동지원사는 코로나19 감염병 시대에 장애인 이용자 당사자 및 가족 중 코로나19 감염이 되었을 때, 혹은 활동지원사 가족 중 감염이 되었을 때도 이용자 당사자의 감염 우려로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휴업 상태에 직면함

◎ 코로나19 감염병 시대를 전 세계적으로 잘 극복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성과는 정부의 적극적인 방역 및 검사 시스템 구축 등의 성과임과 동시에 자신의 감염 예방과 장애인 이용인의 안전까지도 책임져가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돌봄서비스를 수행해온 활동지원사와 같은 필수노동자들이 있었기 때문임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며,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법과 조례 등이 제정되고 있음. 그 법과 조례에 근거하여 대표적인 필수노동자인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감염 등의 위험 및 휴업 시 임금 보전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